

문서번호 : 16-07-사무-01
수 신 : 언론사 제위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담당 : 조영관 (010 - 8848 - 7828)]
제 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단식 시위 “법대로 하자”
전송일자 : 2016. 7. 3.(일)
전송매수 : 총 5매 (기자회견문 포함)

[취재협조요청]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일 릴레이 단식 시위 천명 기자회견

| “법대로 하자” |

일시 : 2016. 7. 4.(월) 오전 10:30
장소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일방적인 조기해산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016년 7월 4일(월)부터 제68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 (일)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법대로 하자” 1일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식을 시작하는 **7월 4일 (월) 오전 10시 30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3. 특별법이 제정된 날 바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판 ‘사사오입’ 주장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 조치는 이러한 헌법에 따른 정부의 의무를 포기한 위헌적 조치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조종(弔鐘)을 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제68주년 제헌절까지 곡기를 끊고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강문대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1. 발언 - 여는발언 - 정연순 변호사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 경과보고 및 릴레이 단식 결의발언 -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팀장)
3. 지지발언 - 민변 회원 국회의원(예정)
4.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 - 기자회견문]

2016. 7.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기자회견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일 릴레리 단식 시위를 시작하며

| “법대로 하자” |

4.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특별조사위원회’) 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온 국민의 염원을 모아 출범하였다. 무려 65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의 서명과, 여/야의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후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직구성은 위한 시행령은 2015. 5. 에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 7. 경 첫 번째 별정직 직원을 채용했으며, 2015. 8. 예산을 배정받고, 2015. 9.부터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사건 접수 및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도 되기 전에 두 번의 청문회, 수차례의 현지조사를 진행하였고, 접수된 수백건의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얼마 전에는 세월호에 과적된 화물 중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과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언론보도에 대한 불법적 개입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기도 했다. 앞으로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선체에 대한 정말 조사도 해야한다. 무엇보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법 / 제도 개정 작업이 남아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기에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세월호인양추진단)는 2016. 6. 30. 자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다고 통보하면서, 오는 7월부터는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일방 통보하였다. 또한, 그에 따라 채용한 인원을 감축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괄 복귀를 명하였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잘못된 허위 사실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된 날 바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8월 예산이 배정되고 인력 확보가 이루어진 시점이 활동기간의 기산점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며 "특조위가 진상을 규명하고 세월호 인양 후 선체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기간·인력·예산 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고 확인한 바 있다.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판 ‘사사오입’ 주장과 다름없다. 독립된 진상규명 기관의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과 인력을 갖추어 실질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므로 예산이 배정되고 인력 확보가 이루어진 2015년 8월 4일이 활동기간의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2017년 2월 3일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종료일이 된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이승만 정부의 물리적 폭력으로 강제해산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을 감추려는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로 조기해산 된다면 훗날 역사는 이를 제2의 반민특위로 기억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정하고 있다.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 조치는 헌법에 따른 정부의 의무를 포기한 위헌적 조치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조종(弔鐘)을 고하는 것이다. 정부의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 조치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 헌법은 이미 그 빛을 잃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정부의 “불법”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는 간단하다. “법대로 하자”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매일 한 명의 변호사가 제68주년 제헌절까지

곡기를 꿰고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것이 법의 상식이고 또한 최소한의 정의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6. 7.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